2023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처분 목록

❍ 본 처분

연번	처분제목(위반사항)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 (천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징계	훈계	주의	
4건		5	1	3	1	22		2	20	147
1	수의계약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		1		3			3	
2	지출원 부재 시 회계처리 부적정	1		1		11			11	
3	시약 위험물 안전관리 및 폐기물 위탁처리 부적정	2		1	1	3		1	2	
4	공가사용 등 복무관리 부적정	1	1			5		1	4	(회수) 147

❍ 현지 처분 ※ 현지 처분요구서는 감사 종료일 현지 배부

연번	처분제목(위반사항)	행정상(건)				재정상 (천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11건		12	9	2	1	2,081
1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견적 입찰 부적정	1	1			
2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보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1			1,881
3	의료폐기물 보관 부적정	1	1			
4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1	1			200
5	식육 중 잔류위반 농가 지정 누락 등 부적정	1		1		
6	가축질병 병성감정 진단액 관리 부적정	1	1			
7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등 부적정	1	1			
8	축산물검사 수수료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부적정	1	1			
9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관리 미준수	1		1		
10	실험장비 교정검사 미이행	1	1			
11	관사 관리 부적정	2	1		1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제　　목 수의계약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동물위생시험소

조 치 기 관 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중부지소·동부지소·북부지소·남부지소·김해축산물검사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에서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입찰공고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 수의계약 입찰공고 기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1] 이하인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9.20.일부 개정, '23. 1. 1. 시행)
- 용역·물품 구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그리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용역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르면 입찰공고 기간은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할 때에는 [그림] 예시와 같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2]하여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공고하여야 한다.

[그림] 수의계약 입찰 공고기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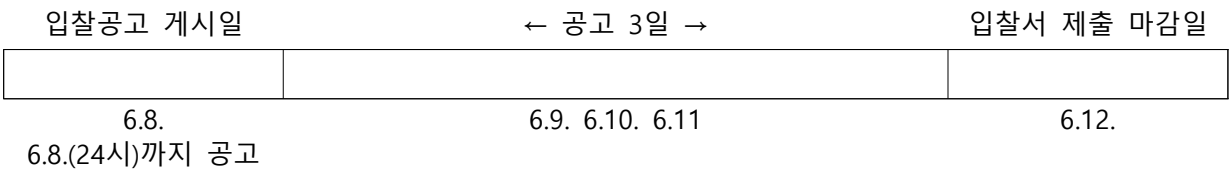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20. 1. 1.부터 2023. 5. 19. 감사일 현재까지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하면서 공고기간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상하지 않고 [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1일 또는 2일간 공고하는 등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2) 행정안전부 질의회신(2014년)에 따르면 수의계약도 일반경쟁 입찰과 같이 공고기간은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회신

[표] 수의계약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내역('20. 1. 1.~'23. 5. 19.)

(단위 : 회)

구 분	계	1일간 공고	2일간 공고	비 고
합 계	**29회**	**10회**	**19회**	
	14회	10회	4회	
	1회		1회	
	1회		1회	
	11회		11회	
	1회		1회	
	1회		1회	

[출처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 세부내역 별첨

3.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20. 11. 16.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기살균기 5대 총 15,000천 원을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회계 업무 담당자의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향후 관련규정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공고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동물위생시험소 ○○○○○○ ○○○(현 ○○○○○○○,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공고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동물위생시험소 ○○○○○○ ○○○(현 ○○○○○○○, ○○○), 동물위생시험소 ○○○○ ○○○○○○ ○○○(현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수의계약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내역

연번	부 서 명	공 고 명	공고게시일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비고
1			'20.5.18. 09:59	'20.5.19~'20.5.20. **(2일)**	'20.5.21. 15:00	
2			'20.10.5. 13:24	'20.10.6. **(1일)**	'20.10.7. 14:00	
3			'20.10.27. 09:14	'20.10.28. **(1일)**	'20.10.29. 15:00	
4			'20.10.27. 09:17	'20.10.28. **(1일)**	'20.10.29. 14:00	
5			'20.11.16. 08:20	'20.11.17. **(1일)**	'20.11.18. 10:00	
6			'20.11.17. 10:01	'20.11.18.~11.19. **(2일)**	'20.11.20. 14:00	
7			'20.11.23. 10:34	'20.11.24. **(1일)**	'20.11.25. 15:00	
8			'20.11.27. 09:07	'20.11.30.~12.1. **(2일)**	'20.12.02. 10:00	28(토), 29(일)
9			'20.12.18. 08:48	'20.12.21. **(1일)**	'20.12.22. 10:00	19(토), 20(일)
10			'21.1.29. 13:08	'20.2.1.~2.2. **(2일)**	'21.2.3. 14:00	30(토), 31(일)
11			'21.3.3. 08:45	'21.3.4. **(1일)**	'21.3.5. 13:21	
12			'21.3.17. 09:27	'21.3.18.~3.19. **(2일)**	'21.3.22. 14:00	20(토), 21(일)
13			'21.3.18. 09:16	'21.3.19., 3.22. **(2일)**	'21.3.23. 14:00	20(토), 21(일)
14			'21.6.3. 11:15	'21.6.4., 6.7. **(2일)**	'21.6.08. 14:00	5(토), 6(일)
15			'21.9.1. 11:02	'21.9.2.~9.3. **(2일)**	'21.9.6. 14:00	4(토) ,5(일)
16			'21.10.26. 11:16	'21.10.27.~10.28. **(2일)**	'21.10.29. 14:00	
17			'21.12.8. 13:07	'21.12.9.	'21.12.10. 15:00	

연번	부 서 명	공 고 명	공고게시일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비고
				(1일)		
18			'21.12.10. 14:23	'21.12.13.~12.14. **(2일)**	'21.12.15. 16:00	11(토), 12(일)
19			'21.12.10. 16:45	'21.12.13.~12.14. **(2일)**	'21.12.15. 15:00	11(토), 12(일)
20			'21.12.23. 09:40	'21.12.24. **(1일)**	'21.12.27. 15:00	25(토), 26(일)
21			'21.12.24. 10:07	'21.12.27.~12.28. **(2일)**	'21.12.29. 14:00	25(토), 26(일)
22			'22.3.29. 09:14	'22.3.30.~3.31. **(2일)**	'22.4.1. 14:00	
23			'22.5.2. 09:35	'22.5.3. **(1일)**	'22.5.4. 10:00	
24			'22.6.9. 14:15	'22.6.10., 6.13. **(2일)**	'22.6.14. 15:00	11(토), 12(일)
25			'22. 6.10. 13:01	'22.6.13.~6.14. **(2일)**	'22.6.15. 14:00	11(토), 12(일)
26			'22.6.16. 18:10	'22.6.17.~6.20. **(2일)**	'22.6.21. 15:00	18(토), 19(일)
27			'22.7.19. 09:39	'22.7.20.~7.21. **(2일)**	'22.7.22. 10:00	
28			'22.10.7. 18:12	'22.10.11.~10.12. **(2일)**	'22.10.13. 14:00	8(토),9(일), 10(대체공휴일)
29			'22.12.7. 10:27	'22.12.8.~12.9. **(2일)**	'22.12.12. 14:00	10(토), 11(일)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제　　목 지출원 부재 시 회계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동물위생시험소

조 치 기 관 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중부지소·동부지소·북부지소·남부지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에서는 「지방회계법」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및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업무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동물위생시험소(제1관서) 회계관직 지정 현황

구분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출처 :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근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대행 및 대리) 및 제4조(책임)에 따르면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실 및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분장사무 중 사무분야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의 순으로 대리하며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지출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출업무를 대리할 회계관계직원을 지정하여 지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지 않거나 권한 없는 자가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20. 1. 1.부터 2023. 5. 19.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회계담당자가 지출원의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 받아 지급명령을 이행하는 등 [표 2]와 같이 총 124건, 456,158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및 각 지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규정 등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과 지출원 대직 명령에 대한 안일한 생각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지출원 부재 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지출원) 동물위생시험소 ○○○○ ○○○○○○○ ○○○(현 ○○○○○), 동물위생시험소 ○○○○ ○○○○○○○○ ○○○(현 ○○○○○), 동물위생시험소 ○○○○ ○○○○○○ ○○○(현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 ○○○○ ○○○○○○○ ○○○(현 동물위생시험소)과 실무담당자 동물위생시험소 ○○○○ ○○○○○○ ○○○(현 ○○○○○○○, ○○○○○), 동물위생시험소 ○○○○ ○○○○○○ ○○○, 동물위생시험소 ○○○○ ○○○○○○ ○○○(현 ○○○○○○○), 동물위생시험소 ○○○○ ○○○○○○ ○○○(현 ○○○○○○○, ○○○○○○○), 동물위생시험소 ○○○○ ○○○○○○ ○○○(현 ○○○○○), 동물위생시험소 ○○○○ ○○○○○○ ○○○(현 ○○○○○○○, ○○○○○○○), 동물위생시험소 ○○○○ ○○○○○○ ○○○(현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세부내역(업무대행자 미지정)(생략)

(단위 : 원)

[출처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및 통보

제　　목 시약 위험물 안전관리 및 폐기물 위탁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동물위생시험소

조 치 기 관 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축산물 시험·검사 실시를 위한 시약 등을 구입 및 사용·관리하고, 시험·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시약 및 폐유기용제[1]에 대하여 폐기물 위탁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시약 위험물 안전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9조(재고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및 같은 조례

1) 시약을 사용한 시험·검사 후 남은 액체상태의 유기화학물질을 말함

시행규칙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표 1]과 같이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하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20조(보관책임)에 따르면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및 지정현황

구분	지정 대상(사업소)	직무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소관부서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회계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주무담당)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

[출처 :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재구성]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지정수량 5분의1 이상에서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그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옥내·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1호에 따르면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전용실은 [표 2]와 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옥내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전용실 기준

구분	옥내 위험물 저장·취급 전용실 기준
내화구조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할 것
방화문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불연재료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설비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적치	위험물을 넣은 용기를 쌓아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쌓지 아니할 것

[출처 :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재구성]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위험물) 및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 1]에 따르면 위험물[2]의 종류 및 지정수량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3]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4]로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항,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에 따르면 제조소등[5]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5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6]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4항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표 2]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별표 5]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2)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4)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6) '제조소등의 단위 및 저장·취급량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5358호('16. 8. 10.))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범위는 하나의 제조소등의 단위에 포함되는 공간적 외연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에 있는 위험물·설비 등은 하나의 제조소등에 포함되고, 위험물의 저장·취급량의 산정 등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개념이며, 옥내저장소의 경우 제조소등의 범위는 독립된 것은 건축물 동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의 기준)에 따르면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시험·검사용 시약을 구입 및 보관·관리할 때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으로 재고를 유지·관리하되, 내화구조 등의 설비를 갖춘 전용실에서 위험물을 보관하고 그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등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소에서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이하 '지정배수 1이상'이라 한다)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20. 1. 1.부터 2023. 5. 19. 감사일 현재까지 시험·검사용 시약을 구입·관리하면서 [표 3]과 같이 재고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으로 재고를 유지·관리하지 않았고 그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등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표 4]와 같이 전용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 내부창고에서 163L의 소량위험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였다.

[표 3] 위험물 안전 관리 부적정 내역

(단위 : L, kg)

<table>
<tr><th rowspan="2">위험물 보관장소</th><th rowspan="2">위험물 보관량7)</th><th colspan="2">위험물 안전관리 여부</th><th colspan="4">전용실 기준 적합여부</th></tr>
<tr><th>재고 관리</th><th>게시판 설치</th><th>내화구조</th><th>방화문</th><th>불연재료</th><th>환기설비</th></tr>
<tr><td></td><td>163</td><td rowspan="2">미이행</td><td rowspan="2">미이행</td><td colspan="4">부적정</td></tr>
<tr><td></td><td>126</td><td colspan="4">적정</td></tr>
</table>

[출처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7) 2023. 5. 19. 감사일 현재 기준

[표 4] 위험물 보관 부적정 현황

구분	보관 현황	부적정 사유
○○○○○○ 내부창고	생 략	전용실 기준 부적합

[출처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감사기간('23. 5. 9. ~ 5. 19.) 동안 위험물 보관수량을 점검한 결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표 5]와 같이 지정배수가 1 이상인 1.18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본관 내 ○○○○○○ 등 2개 장소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소방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있었다.

[표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부적정 내역

(단위 : L, kg)

위험물 및 지정수량			시약 보관 부적정 내역		
유별	품명	지정수량(A)	보관수량(B)	지정배수(B/A)	보관장소
계			288.57	1.18[8]	생략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50	20	0.4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	52.37	0.26185	
	제1석유류(수용성액체)	400	64.2	0.1605	
	알코올류	400	137.5	0.34375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1,000	3.5	0.0035	
	제2석유류(수용성액체)	2,000	10	0.005	
제6류 (산화성액체)	과염소산	300	1	0.0033	

[출처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위험물 보관 세부내역 [별표] 참조

8)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로 봄
(지정배수 = 20/50 + 52.37/200 + 64.2/400 + 137.5/400 + 3.5/1,000 + 10/2,000 + 1/300 = 1.1779)

3. 폐시약 등 폐기물 위탁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9]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Ⅵ.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확인의무, 7.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 라에 따르면 폐기물수집·운반업[10]자와 처분업[11]자 등을 포함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다만 출납원이나

9)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
10)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11)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소각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등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 처분하는 영업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폐시약 및 폐유기용제를 위탁 처리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와의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운반비용은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비용은 처리업자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서는 2020. 1. 1.부터 2023. 5. 19. 감사일 현재까지 폐시약 및 폐유기용제 위탁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로 2명 이상인 공동계약임에도 [표 6]과 같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간처리업자의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운반 및 처리비용을 운반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등 총 4건, 8,305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6] 폐기물 위탁 처리 부적정 내역

구분	지출일자	지출금액 (천 원)	의무사항 이행여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여부	중간처리업자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여부	운반·처리단가 구분여부	정당한 채주에 비용 지급여부
계	4건	8,305				
폐유기용제	'20. 6. 23.	1,540	이행	이행	미이행	미이행
	'21. 8. 4.	1,540	미이행	미이행		
	'22. 6. 30.	1,540				
폐시약	'22. 10. 21.	3,685			이행	

[출처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9. 11. 29.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를 통해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을 일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 현지 주의 조치하였으나,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23. 5. 19. 감사일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위험물에 대하여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지정수량 미만으로 재고를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물의 취지, 종류, 품명, 최대수량 등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전용 보관시설 내에 위험물을 전량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회계법」을 숙지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고 시약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동물위생시험소 ○○○○○○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실무책임자 동물위생시험소 ○○○○○○ ○○○○○○○○ ○○○○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시약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동물위생시험소 ○○○○○○ ○○○○○○○○ ○○○(현 동물위생시험소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훈계, 주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② 시약 구입 및 관리 시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으로 재고를 유지·관리하고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상의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보관하는 등 시약 관리의 적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위험물 보관 세부내역

(단위 : L, kg)

위험물 종류	위험물 품명	시약명	성분	보관 수량	보관장소	
계				288.57	127.57	163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Diethyl ether	Diethyl ether	20	18	2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Toluene	Toluene	1.6	1.6	
		cyclohexane	cyclohexane	0.9	0.9	
		Ethyl acetate	Ethyl acetate	27	11	16
		Hexane(4L)	Hexane	0	0	
		Petroleum ether	n-pentane(20%)	20	20	
		2-Butanone	2-Butanone	0.9	0.9	
		Bruker standard solvent	Acetonitril(50%),Trifluoroacetic acid(2.5%)	0.09	0.09	
		Heptane	Heptane	0.9	0.9	
		Isooctane	Isooctane	0.9	0.9	
		2,2,4-trimethyl pentane	2,2,5-trimethyl pentane	0.08	0.08	
	제1석유류 (수용성액체)	Pyridine	Pyridine	0.2	0.2	
		Acetonitril	Acetonitril	40	8	32
		Aceton	Aceton	24	16	8
	알코올류	소독용 에탄올(83%)	Ethanol	9	9	
		에틸에테르	ethyl ether	16	16	
		Ethanol	Ethanol	4	4	
		Ethyl Alcohol(95%)	Ethanol	72	0	72
		Ethyl alcohol	Ethanol	4	4	
		Methanol	Methanol	32	0	32
		1-propanol	1-propanol	0.5	0.5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1-Butanol	1-Butanol	1	1	
		3-Methyl-1-butanol	3-Methyl-1-butanol	1	1	
		Isoamylalcohol	Isoamylalcohol	1	1	
		2-Methyl-1-propanol	2-Methyl-1-propanol	0.5	0.5	
	제2석유류 (수용성액체)	acetic acid, glacial	acetic acid	7.5	7.5	
		acetic acid	acetic acid	1.1	1.1	
		formic acid	formic acid	0.4	0.4	
		2-Methoxyethanol	2-Methoxyethanol	1	1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perchlonic acid 70%	perchlonic acid	1	0	1

[출처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시정

제　　목 공가 사용 등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동물위생시험소

조 치 기 관 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중부지소·동부지소·북부지소·남부지소·김해축산물검사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 및 일·가정 양립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통상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2.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 확립)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6(공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2]에 따른 건강검진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에 따르면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승인을 받은 공가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 1. 1. ~ '23. 5. 19.) 중 [표 1]과 같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2022. 12. 16. 공가를 승인받은 소속 공무원 ○○○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채 결근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해당 결근일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147,210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공가 부적정 사용 및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내역

부서명	직급	성명	공가 부적정 사용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일자	사유	**확인결과**	사유	**금액**
			'22.12.16.(금)	건강검진	**건강검진 미실시 (결근)**	결근일 연가일수 미차감	**147,210원**

[출처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1)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제131조 임시건강진단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이 있음

3. 유연근무제 출·퇴근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3]을 변경하는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Ⅴ. 유연근무제, 4. 공통사항, 마. 출·퇴근 지정에 따르면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유연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09:00) 또는 퇴근시간(18:00)을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서장 등 관리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에 따른 복무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에서는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연근무 시 출퇴근 관리 등 복무관리 철저'(○○○-5644호, 2022. 3. 16.) 공문을 전 부서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통보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유연근무 대상자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인사랑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과 부서별로 유연근무 대상자에 대한 자체 복무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토요일 휴무)이며,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되어 있음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를 승인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인사랑시스템을 통해 승인받은 출·퇴근 시간에 등록을 하도록 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22. 3. 1.[4]부터 2023. 5. 19.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직원 35명에 대해 총 669회의 유연근무를 승인하면서 유연근무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등록 여부 등에 대한 복무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5]

이에 대해 이번 감사기간('23. 5. 9. ~ 5. 19.) 중 유연근무 대상자들의 복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 ○○○의 경우 4회에 걸쳐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등 총 10명의 직원이 21회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미준수하였거나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았다.

[표 2] 유연근무자 출·퇴근 부적정 내역

연번	직 급	성 명	유연근무 승인 현황			출·퇴근 등록시간		부적정 내 용	비고
			유 형	유연근무일	승인시간	출근	퇴근		
1			시차출퇴근제	2022.03.31	09:30~18:30	09:56	18:56	26분 출근지각	
2			시차출퇴근제	2022.03.07	06:00~15:00	05:58	-	퇴근 미등록	
3			시차출퇴근제	2022.06.21	10:30~19:30	10:22	-	퇴근 미등록	
4			시차출퇴근제	2022.06.16	06:20~15:20	06:36	-	퇴근 미등록	
5			시차출퇴근제	2022.06.10	06:20~15:20	06:07	-	퇴근 미등록	
6			스마트워크	2022.08.26	06:00~15:00	06:14	18:17	14분 출근지각	
7			시차출퇴근제	2022.08.26	06:10~15:10	06:17	15:21	7분 출근지각	

4)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도입(2022. 3. 7.) 이전의 경우 데이터가 부정확하여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시점부터 확인하였음

5) 동물위생시험소 ○○○○에서는 유연근무제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실시('22.12.6.)하였고, ○○○○에서는 도축장 현장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음('22.8.17.)

연번	직 급	성 명	유연근무 승인 현황			출·퇴근 등록시간		부적정 내 용	비고
			유 형	유연근무일	승인시간	출근	퇴근		
8			스마트워크	2022.09.08	06:00~15:00	06:14	16:08	14분 출근지각	
9			스마트워크	2022.09.16	06:00~15:00	06:15	16:33	15분 출근지각	
10			시차출퇴근제	2022.10.14	07:00~16:00	06:50	-	퇴근 미등록	
11			시차출퇴근제	2022.10.21	07:00~16:00	06:37	-	퇴근 미등록	
12			시차출퇴근제	2022.11.01	08:00~17:00	07:55	-	퇴근 미등록	
13			시차출퇴근제	2022.11.11	08:00~17:00	07:55	-	퇴근 미등록	
14			시차출퇴근제	2022.11.14	10:50~19:50	-	21:59	출근 미등록	
15			시차출퇴근제	2022.11.17	10:50~19:50	-	22:55	출근 미등록	
16			시차출퇴근제	2022.12.16	07:00~16:00	-	-	출퇴근 미등록	
17			시차출퇴근제	2022.12.16	14:30~19:30	14:37	19:38	7분 출근지각	
18			시차출퇴근제	2022.12.21	07:00~16:00	07:11	18:35	11분 출근지각	
19			시차출퇴근제	2023.01.04	07:00~16:00	07:12	16:25	12분 출근지각	
20			시차출퇴근제	2023.01.13	06:30~15:30	06:41	18:28	11분 출근지각	
21			시차출퇴근제	2023.04.03	07:30~16:30	07:10	-	퇴근 미등록	

[출처: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등을 위반하여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동물위생시험소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유연근무 시 출·퇴근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동물위생시험소 ○○○○○○ ○○○, 동물위생시험소 ○○○○ ○○○○○○○ ○○○, 동물위생시험소 ○○○○ ○○○○○○○○ ○○○, 동물위생시험소 ○○○○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훈계, 주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등에 따라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에게 지급한 연가보상비 147,210원은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시정)**